

대구예술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3.01.28.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개정 2025.03.17.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건학이념과 학칙 제 13장에 의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 개인 등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교 장학금 : 학교회계(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외부 장학금 : 교외의 각종 장학단체나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 (장학위원회의 구성) 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처장, 학부장 및 전공주임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8.01.)

③ 학생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및 예산
3.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배정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
5. 기타 중요사항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생선발

제7조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및 재학 중인 자(휴학자 제외)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등록회수가 8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4. 장학생 비율은 학부 및 전공, 학년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학생 비율은 당해 학기 성적취득인원의 학부 및 전공 학년간 25% 이내로 하며 30%를 넘지 못한다.
5. 법령에 의한 우선 면제자, 장학금 계속 수혜대상자를 우선한다.
6.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7.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되 가사사정을 고려한다.
8. 정정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선발절차) 장학생의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08.01.)

1. 학생처에서는 매학기 종류별, 학부 및 전공별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부 및 전공에 통보한다.
2. 종류별, 학부 및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생처에 추천한다.
3. 학생처에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각 학부 및 전공에 통보한다.
4. 제1호내지 제3호 이외 경우에는 학생처에서 학부 및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추후 장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9조 (장학생 추천)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장학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적 또는 미등록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3.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제11조 (교체추천) ①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자중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를 교체 추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제외한다.

② 각 학부 및 전공 장학생 추천서에 그 사유와 교체 추천내용을 명시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01.)

③ 교체 추천기간은 매학기 등록 마감후 2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시 개인별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④ 장학생으로서 등록을 필하고 일반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 당해학기 등록을 인정한다.

⑤ 장학금은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총칭한다.

제13조 (중복지급) ①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특별장학금, 면학장학금(저소득장학금)

2. 장학 단체 및 장학금 기탁자가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는 외부 장학금

② 중복 수혜 대상자는 본인이 그중 유리한 장학금을 택일 할 수 있다. 단, 선지급 수혜자는 교체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로 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중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이수 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당해 학기내로 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학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시 이수학점 기준 일괄변경 : 2025학년도 신입생 및 2027학년도 편입생부터 12학점 수강기준 적용하고, 이전 년도 신·편입생은 개정 전(15학점) 수강학점 기준을 적용한다.

장 학생 추천서

소 속	학과 학부/전공 학년(주.야) 학번 :			
성 명	한 글	(인)	전 화 번 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p>장학종류 : _____</p> <p>추천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인 : 학부/전공 전공주임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p>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생 추천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1통 첨부)

※ 매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학업성적이 과락 없이(추천, 보훈 및 면학장학금은 예외) 각 중 장학종별 성적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단, 2024학년도 신입생 및 2026학년도 편입생까지 기존 15학점 적용.(개정 2025.03.17.)

장학종류	신청학기	신청기간	구비서류	평균평점	제출처
봉사장학금	매학기	학 기 중	성적증명서 1통	2.5(C+)이상	학생처
성적장학금	매학기	학 기 중			학생처
실기장학금	매학기	학 기 중	전공실기성적평정표 1부 기타 근거 서류 첨부	실기성적 우수자	학생처
근로장학금	매학기	학 기 중			학생처
보훈장학금	한학기	등록기간내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1통 주민등록(호적)등본 1통		학생처
교직원복지 장학금	한학기	등록기간내	재직증명서 1통 주민등록(호적)등본 1통	3.0이상 전액 3.0미만 전액	학생처
가족장학금	한학기	입학시	주민등록(호적)등본 1통		학생처
경상북도 청소년실기대 회장학금	한학기	입학시	장학증서		학생처